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8 선고 2021가단5237919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B

2. C

변 론 종 결 2022. 7. 11.

판 결 선 고 2022. 8. 8.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0.부터 2021.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들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8. 체결된 매매계약은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0.부터 2021.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22. 7. 11.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0.부터 2021.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22. 7. 11.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피고 B에 대하여: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C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피고 C는 피고 B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8.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 별지1 청구원인 중 ‘Ⅳ. 1. 주위적 청구(채권자대위에 의한 구상금청구) 및 Ⅴ. 2.항 중 1, 2, 3행’ 기재와 같다.

나. 판단

피고 C가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김진영

별지